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2009. 3. 1 제정
 2009. 5. 1 일부개정
 2009. 9. 1 일부개정
 2010. 9. 1 일부개정
 2011. 3. 1 일부개정
 2012. 9. 1 전부개정
 2013. 3. 1 전부개정
 2015. 1. 1 전부개정
 2015. 9. 1 일부개정
 2019. 3. 1 전부개정
 2020. 3. 1 일부개정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고려대학교 학칙」(다음부터는 ‘본교 학칙’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서 위임한 법학전문대학원(다음부터는 ‘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조직, 학사운영, 교육과정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적) 대학원은 법학의 학술이론과 응용방법 및 법조인으로서의 인성을 학생들에게 교수하고 자유·평등·정의를 구현하는 지도자적 우수 전문 법조인과 법학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목표) 대학원의 교육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간과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국가와 인류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품성의 교육
2. 집단과 개인의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전문지식과 직업윤리의 교육
3. 올바른 정책판단과 제도개선을 선도하는 학문적 지식과 소양의 교육

제4조(위임과 준용) ① 이 학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운영규정」 등 하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 학칙이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려대학교 학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

제2장 조직 및 과정

제5조(원장 등) ① 대학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대학원의 사무를 통할하고 대학원을 대표한다.

② 대학원에 부원장과 주임 등을 두어 해당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제6조(위원회) 대학원에 교육과정, 학사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 ① 대학원에 학위과정으로 다음 각 호를 둔다.

1. 법학전문석사(이하 '석사과정'이라 함)
 2. 법학전문박사(이하 '박사과정'이라 함)
- ② 대학원에 비학위과정으로 전문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제3장 학적관리

제1절 입학

제8조(입학 및 입학공정관리위원회) ① 총장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학교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학을 허가한다.

② 대학원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공정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9조(입학자격) 대학원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과정: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박사과정: 법학전문석사학위(법학석사학위 포함함)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입학전형)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전문연구과정의 입학전형은 관련 법령과 학교규칙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시행한다.

제2절 편입학·재입학

제11조(편입학) 편입학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연도의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재입학) 제적된 사람에 대하여 학교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사람에 대해서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3절 학적의 변경과 소멸

제13조(휴학과 복학) ① 학생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휴학할 수 있다.

② 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즉시 복학하여야 한다.

제14조(제적) ① 스스로 퇴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제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제적 처분을 한다.

1. 통산 2회 유급되거나 연속하여 3회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
2. 재학연한 5년을 초과한 학생
3. 그밖에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칙」에서 정한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

제4장 교육과정과 학사운영

제1절 일반규정

제15조(교육과정) ① 석사과정의 교육과정은 기초과정과 전문과정으로 구성한다.

② 수업은 정규수업과 계절수업으로 구분하며, 강의·세미나·모의재판·현장실습 등의 형태로 할 수 있다.

제16조(수업연한) ①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과정: 3년
2. 박사과정: 2년
3. 전문연구과정: 1년

② 수업연한은 관련 법령과 학교규칙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제17조(재학연한) ① 석사과정의 재학연한은 5년(휴학기간을 제외함)으로 한다.

② 박사과정의 재학연한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10년 내로 한다.

제18조(수강신청) 수강신청은 지정된 수강신청 기일 내 지정된 방식으로 한다.

제19조(학점 인정) 다른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학교규칙에 따라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절 시험과 성적처리

제20조(시험과 응시자격, 출결관리) ① 석사과정 교과목의 시험은 해당 학기의 중간과 기말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말시험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

제21조(성적평가) 석사과정의 성적평가는 출석·참여·과제·시험 등의 평가요소를 종합하여 실시한다.

제22조(재수강) 학생은 성적평점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과목에 대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제23조(성적경고) 해당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석사과정의 학생에게 성적경고를 할 수 있다.

제24조(유급) 석사과정 학생의 연속된 2개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유급한다.

제3절 수료와 학위

제25조(수료) 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학교규칙에서 정하는 일정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26조(학위취득)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취득 등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제27조(전문인증) 대학원장은 법학전문석사 학위 취득자에 대하여 전문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5장 시 설

제28조 <삭제>

제29조(기숙사) 대학원은 전용기숙사를 둔다.

제6장 학생활동과 복지

제30조(학생지도와 지도교수) ① 대학원은 학생의 학습·생활과 진로 등의 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제도를 운영한다.

② 대학원은 학생의 진로지도 등을 위하여 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제31조(학생자치활동) ① 학생의 자치활동을 신장시키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둔다.

②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③ 대학원은 학술지 간행, 동아리 활동 등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한다.

제32조(복지) 대학원은 장애학생 그 밖의 사회적 약자의 학교생활과 진로·취업 지도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33조(장학금) 대학원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포상과 징계 등) 대학원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포상과 징계를 할 수 있다.

제7장 학칙의 개정

제35조(개정 절차) 이 학칙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칙 개정안의 작성: 대학원장이 대학원 교수회의의 승인을 거쳐 학칙 개정안 작성
2. 학칙 개정안의 이송: 대학원장이 교무처장에게 학칙 개정안 이송
3. 학칙 개정안의 공고: 교무처장이 학칙 개정안을 교내 신문,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7일 이상 공고
4. 의견 접수와 심의안 작성: 교무처장이 공고기간 중에 접수한 의견을 검토하여 심의안 작성
5. 교무위원회의 심의
6.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7.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의 승인
8. 확정·공포: 총장이 학칙 개정안을 확정·공포
9. 시행

제36조(절차의 생략) 상위규범 개정사항의 반영, 단순한 자구 수정,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과 같이 기술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은 제35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교가 법학전문대학원의 본인가를 얻은 때로부터 대학원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는 본 시행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제15조, 제33조, 제41조 개정]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1조 내지 제23조, 제42조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4조, 제26조 개정]

제2조(경과조치) 제24조는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4조 개정]

제2조(경과조치) 제24조는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8조 신설 및 제6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9조 개정, 제30조 내지 제47조 조번호 변경]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0조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부개정, 명칭 변경]

제2조(경과조치) 제22조 제2항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부개정]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부개정]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4조 개정, [별표1] 및 [별표2] 삭제)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8조 삭제)
2. (경과조치) 제28조의 개정사항은 도서관 기구·직제 조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자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